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9. 28 선고 2021가단3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8. 17.

판 결 선 고 2021. 9. 28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. 4. 24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0. 4. 28. 접수 제119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D에 대하여 2019. 12. 4. 이전부터 연체된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으로 2021. 2. 2.을 기준으로 12,854,85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(갑 제2호증).

D은 망 E 명의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상속받아 8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, 2020. 4. 24.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(이하 ‘이 사건 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0. 4. 2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(갑 제4호증의 1, 2).

그런데 이 사건 협의 당시 D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 F에 대하여 약 8,500,000원의 채무(을 제2호증)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,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D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.

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판사 허윤범

별지